노인장기요양보험은

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더불어 가족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
특히,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입니다.

이렇게 어르신이 재가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"요양보호사"는

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 급여(서비스)를 제공하는 **전문 인력**입니다.

1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합니다.

신체활동 지원

-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, 개인위생활동(세수, 양치, 머리 감기, 목욕 등)
- 몸단장(머리 손질, 손·발톱 정리, 옷 갈아입기 등)
- 체위변경, 이동 도움, 배설 도움(화장실·이동변기 이용, 기저귀 교체 등)
-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

인지활동 지원

- 회상 훈련, 기억력 향상활동,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(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, 요리하기 등)

일상생활 지원

- 외출 동행(장보기, 산책, 물품 구매, 병원 이용 등)
- 수급자의 방 청소 및 환경 관리, 빨래, 식사준비, 설거지 등

정서 지원

- 말벗, 의사소통 도움 등

2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.

-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
-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

수급자 이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

-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, 빨래, 시장보기
- 가족이 거주하는 방 청소
- 김장도움, 결혼식 또는 기타 집안 경조사 지원
- 가족을 위한 관공서 업무 지원 등

기타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

- 신체 기능개선을 위한 목적 외에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요구
- 잔디깎기, 텃밭 매기 등